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18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를 개정·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현행화
 - 총 조례 5개/조문 8건(기획예산과 등 5개 부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이나 다른 관련 자치법규의 조문·내용·제명의 변경, 상위 법령의 근거 조문 삭제 등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기타 단순 용어정비를 위해 일괄개정의 방법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내 관련 행정규칙의 제명 개정을 반영함.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 법률 제명 및 조문 번호 개정을 반영함.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내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문 삭제로 인한 조문을 삭제함.
-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관련 법률 조문 번호 개정 반영 등 기타 용어를 정비함.
-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내 관련 법률 조문 번호 개정을 반영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영등포구의 법령 불부합 자치 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5 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현행화

- 1) 총 조례 5개/조문 8건(기획예산과 등 5개 부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원칙)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u>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u>」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p>	<p>제5조(기본원칙) ----- ----- -----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p>
<p>제7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u>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u>」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7조(집행기준) ① -----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p>
<p>1. 2. (생략) ②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 -----.</p>
<p>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p> <p>6. ~ 9. (생략)</p>	<p>제2조의2(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p> <p>6. ~ 9.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삭 제></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여비) 위원이 <u>위원회의</u>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u> ----- ----- ----- -----.</p> <p>제3조(여비)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u>----- ----- ----- -----.</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 ----- ----- ----- ----- ----- ----- ----- -----</p>